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423

발의연월일: 2022. 1. 14.

발 의 자:서일준·김승수·김용판

박 진 · 양금희 · 윤한홍

이 용・이주환・조명희

최형두 · 추경호 · 하영제

홍문표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,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(특례시)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,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・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마약류도매업자 및 대마재배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허가를 받도록 하고, 마약류관리자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정을 받도록 함. 또한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허가증 발급 권한에 특별자치시장을 포 함함으로서 정책결정자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임(안 제6조, 제7 조, 제11조의4 및 제46조).

법률 제 호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"를 "제3호 및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시·도지사"를 "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"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전단 중 "시·도지사"를 "특별자치시장"으로 한다.

제11조의4제2항제1호 중 "시·도지사"를 "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 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"로 한다.

제46조제5항제1호 중 "국토교통부장관"을 "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 지사·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행정시장을 제외한다. 제3호에서 같다)·군수 또는 구청장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시·도지사"를 "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)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특별법」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의 비용평가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3조(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,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·신고,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·신고, 그 밖의 행위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)	제6조(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)
①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다음	①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	
따라 제1호・제2호 및 제4호에	
해당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	
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, <u>제</u>	<u>제3</u>
3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장	호 및
<u>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</u>	
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	
"시·도지사"라 한다)의 허가를	
<u>받아야 하며,</u> 제5호에 해당하는	
자는 특별자치시장・시장・군	
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	
야 한다.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	
할 때에도 또한 같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마약류관리자가 되려면 마약	②
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	
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총리령	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시·도</u>	<u>특별자</u>
<u>지사</u> 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. 지	<u> 치시장・시장・군수 또는 구청</u>
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	<u> 장</u>
또한 같다.	

③ • ④ (생 략)

제7조(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) 기 제6조제1항·제2항이나 제6 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이하 "허가관청"이라한다)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(이하 "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"이라한다) 명부(名簿)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허가중 또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한다. 허가 또는 지정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(생 략)

- 제11조의4(마약류 통합정보의 제 7 공 등) ① (생 략)
 -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합 정보센터의 장은 마약류 통합정 보 및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제3자에게 제 공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•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7조(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)
①
<u>특별자치시장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11조의4(마약류 통합정보의 제
공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

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
- 1.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 ·구청장이 제41조에 따른 마 약류의 취급 감시 등 안전관 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
- 2. ~ 4. (생략)
- ③ (생략)
- 제46조(과징금처분) ① ~ ④ (생략)
 - ⑤ 허가관청은 제4항에 따라 체 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 각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 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「건축법」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: <u>국토교통부</u> 장관

1. <u>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</u>
치시장・도지사 또는 특별자
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
<u>라 한다)</u>
2. ~ 4. (현행과 같음)
③ (현행과 같음)
제46조(과징금처분) ① ~ ④ (현
행과 같음)
⑤
1
<u>특별자치시장</u>
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(「제
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

- 2. (생략)
- 3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: <u>시</u> <u>•도지사</u>

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에 따른 행정시장을 제외한다. 제3호에서 같다)·군수 또는 구청장

- 2. (현행과 같음)
- 3. -----

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